

어항개발의 촉진과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항개념에 일대변혁을 초래하는 혁신적인 개정 법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와같이 어항의 개념과 기능이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어항의 건설기술이나 조사연구등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능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담당해 줄 특수법인의 설립이며, 이러한 사회정책적 배경하에서 어항 관계인이나 전체어민들이 어항법하의 특수법인으로 새로 탄생되는 어항협회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클 수 밖에 없다.

새로 발족되는 어항협회에 바라는 사항 또한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중병을 앓고 있는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문제를 제3종어항의 확대지정과 개발촉

진을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가기위해서는 첫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문제는 수산업이라는 단순한 산업정책으로서는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국토 유지 보전과 어촌의 유지 발전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항협회는 조사 용역 및 연구 홍보, 어항건설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금후 3종어항 지정 및 개발방향을 수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낙도·벽지·도서지역 어촌의 유지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지정하고 그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가는 일들을 어항협회가 선도해 주기 바란다. ¶

기술개발도 촉진 어촌개발에 求心體 되어야

張 奉 勳 〈長項水協 專務〉

지금 까지의 한국어항협회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자율단체로서 지난 6년여동안 나름대로 우리 나라 어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다 그간에 어항법 개정을 위하여 피나는 각고 끝에 개정 어항법이 보장하는 특별 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한국어항협회가 새

롭게 태어나게 됨에 따라 어항발전을 위한 크나큰 사명을 수명케 되어 수산인의 기대가 큰 것이다.

1969년에 어항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지금껏 어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24년이 경과된 것이다.

이제 전세계가 바다에 관심을 집중하여

200해리 선포와 수질오염방지 및 자원관리를 통한 자국해역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어항을 핵으로 하는 폐적한 환경의 어항도시로,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어항 상업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와 어촌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에게는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어항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야말로 한국 수산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월 18일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어항법 개정법률(全文) 6장 42조 부칙으로 구성된 어항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6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법제38조(어항협회의 설립)에 의거 새롭게 탄생되는 “한국어항협회”는 오직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강력한 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 어항기술개발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없어서는 않을 유일한 협회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아직 우리 수산인의 인식은 어항개발이 어촌발전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산 선진국 일본은 1955년이후 현재까지 제1,2,3,4 종항의 지정항 수가 무려 2,951 개나 되며 어항에 투자된 예산이 7조9,920억 엔이나 된다.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이 어촌 발전의 동기를 부여시켜 주었다.

도시인에게는 신선한 안식처를 제공, 도시인과 어촌인이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외 소득개발로 어촌발전을 꾀하여 왔다.

특히 수산업에 비중이 큰 어항을 상업항으

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항도시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가공시설과 기술개발, 유통센타, 전운위탁시설등 종합적 시스템화를 하고, 어항 환경개선에도 치중하여 살기좋은 어촌도시를 건설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정된 어항 수가 399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복합기능이 아닌 단순 어선 대피, 계류항등 기초적 기능에 불과하므로 어항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정부는 복잡다난한 복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여건과 상황적 변화를 고려한 조사, 연구,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이 법이 보장하는 한국어항협회에 선별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위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완비된 연후 어항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의 우선순위, 설계감리, 자원조달 가능성 등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정부예산의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수 있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항도시를 건설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매리트’를 창출할 수 있는 휴식공간 개발만이 관광어항도시로 성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어업외 소득제고로 복지어촌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官과 民 사이에서 한국어항협회가 매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어항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❸